

2023년 고용·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 실시 공고

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3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3호에 따라 2023년 고용·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.

1. 교육대상

「세무사법」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동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

2. 제출서류 : 없음

3. 교육내용

- 가. 교육과목 : 보험사무대행기관제도의 이해 및 준수사항(1시간), 보험료징수법령의 이해(1시간),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의 이해(2시간)
- 나. 교육시간 : 4시간
- 다. 교육대상 : 등록 세무사(사무장 및 직원 불가, 신분증 또는 세무사증 지참)
- 라. 교육비 : 무료
- 마. 교육일정 : 상시 (동영상 온라인 교육), 단, 각 지방회 별로 60명 이상 대면교육 수요가 있을 경우, 별도 교육계획 수립 후 병행예정
- 바. 신청방법 :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의 [보험사무대행 인가교육] 선택 후 수강신청
- 사. 교육운영
 - 출결관리 방법 :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의 진도율 100% 달성시 출석 및 이수 인정
 - 교재는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의 보험사무대행 인가교육 강의실 내에 PDF파일로 제공
 - 진도율이 100%가 아닌 경우 교육이수 확인증이 교부되지 않으니 교육시간 엄수
- 아. 기타사항
 - 세무법인의 경우 교육이수여부와 관계없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 - 이미 공단으로부터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교육 수강 대상이 아닙니다.
 - 교육을 이미 수료한 회원님은 교육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.

2022년 12월 15일
한 국 세 무 사 회 장